

의안번호	2221326
의 퇴 인	조승환 의원
회 답 일	2026.10.13.
추 계 번호	26F471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, 지방세는 2027년 5.4억 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총 16.2억원(연평균 5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재산세 등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안 제14조(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 제1항	-5.4	-5.4	-5.4	-16.2	-5.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(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 제1항	○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, 산림조합중앙회가 취득·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(안 제14조제1항)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4조(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 제1항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관련 세수효과가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하며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으로 설정함
- 향후 취득세 및 재산세 세수효과는 최근 3년(2022~2024년)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3년(2022~2024년)의 연평균 감면 실적: 5.4억원

3. 재정수반 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 개요 및 감면 실적

- (제도개요)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,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·판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(안 제14조제1항)
 - 감면율: 취득세 25%, 재산세 25%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
- (감면실적) 농업협동조합 등의 지방세 감면 실적은 2022년 5.3억원에서 2024년 6.2억원으로 변동
 - 재산세 및 조합중앙회 구매·판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실적은

2022~2024년 동안 증감 추세가 일정하지 않음

[표 2]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: 2022~2024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세목	2022	2023	2024	연평균
조합중앙회 구매·판매용 부동산 (안 제14조제1항)	취득세	0.8	0.2	0.7	0.6
	재산세	4.5	4.3	5.5	4.8
계		5.3	4.5	6.2	5.4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나. 추계방법

- 향후 취득세 및 재산세 세수효과는 최근 3년(2022~2024년)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향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은 최근 3년(2022~2024년)의 연평균 감면액(5.4억원)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: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세목	2027	2028	2029
조합중앙회 구매·판매용 부동산 (안 제14조제1항)	취득세	0.6	0.6	0.6
	재산세	4.8	4.8	4.8
계		5.4	5.4	5.4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다. 추계결과

-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, 지방세는 2027년 5.4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총 16.2억원(연평균 5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4]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: 취득세 등, 2027~2029년
(단위: 억원)

세목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취득세	-0.6	-0.6	-0.6	-1.8	-0.6
재산세	-4.8	-4.8	-4.8	-14.4	-4.8
계	-5.4	-5.4	-5.4	-16.2	-5.4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김주현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주현	02-6788-4836	kjh@assembly.go.kr